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

신 두 섭*
하 혜 수**

국문요약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세제도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고 있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제도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부금 형태로 도입되면서 기존 기부금제도에서 범위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비수도권에 고향을 두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향에 대한 인식과 실제 기부를 통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부경험의 유무는 고향발전기부와 크게 상관이 없었으며, 고향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의 지불의사액 추정에 있어서는 고향자와 거주주 등 안정적인 여건에 있는 경우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련 제도 및 정책 입안에 있어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향세, 고향발전기부금, 기부동기, CVM, 지불의사액(WTP)

I. 머리말

1995년 이후 민선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여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평가를 통해 성과와 향후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적 분권과 주민서비스 수준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자체재원의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온전한 수준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과 재정적 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정적 분권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 제1저자

** 교신저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교부금 불교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주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관련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에서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세, 컨테이너세, 입도세 등 지방세의 신세원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ふるさと) 납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제도 취지대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도시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나 농어촌 지역의 농특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도입하기에는 처해 있는 상황 및 관련 제도의 차이로 인해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도 일본의 고향세제도 도입 시 장단점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염명배, 2010; 신두섭·염명배, 2016). 더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학계에서의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할 경우 기대하지 않은 효과(unexpected effect)가 초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향기부금제의 한국적 도입가능성을 연구하되 기부동기와 재정수준(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향납세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고, 일본의 고향세제도 도입 상황과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향발전기부금에 대한 인식, 기부동기, 방법 및 규모 등을 파악하고,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고향발전기부의 지불의사액(재정수준)을 추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고향발전기부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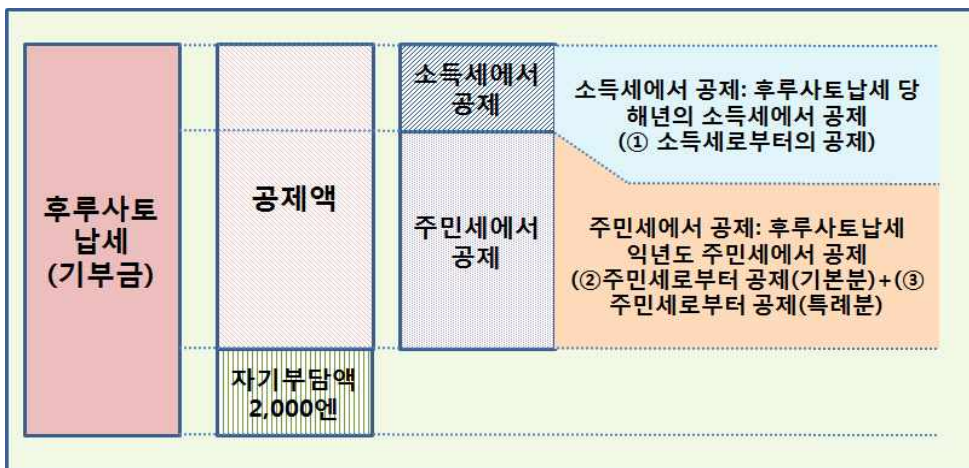
고향발전기부금제(故郷發展寄附金制)란 본인이 태어난 곳이나 관심 있는 지역,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한 경우 조세 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고향)을 선택하여 조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고향)에 대한 기부를 하게 하고, 그 부분만큼 조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기부금제도의 운영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기부금제의 일종이고,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라는 점에서 '고향발전기부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기부에 대한 조세 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에 기초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는 차이가 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논리구조의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절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과정과 현재까지 발전 현황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고향세(고향납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10월 일본 후쿠이(福井) 현의 니시카와 잇세이(西川一誠) 지사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주창하고 나서면서부터였다(신두섭·염명배, 2016). 이 제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확충 측면에서 찬성하였으나 민주당과 도쿄 등 세수 감소가 예상 되는 대도시로부터는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염명배, 2016). 2008년 4월 30일 중전의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공제(제37조의 2)를 추가하여 개인주민세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도입하게 되는데, 고향납세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은 2009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본래 '지방창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와 지자체간의 세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일본은 '삼위일체 개혁' 등 대대적인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원이양과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 10% 상당액을 지역에 납부'하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박균조, 2008; 염명배, 2010).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고향이나 관심 지역에 기부를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방창생' 및 지역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세 납세제도의 구조는 주민 스스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전액 공제되는 제도이다. 그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일본 고향세의 공제액 계산



* 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인용

이 때 공제는 크게 소득세로부터의 공제와 주민세로부터의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득세로부터의 공제는 고향납세액에서 자기 부담금 2,000엔을 뺀(고향납세액-2,000엔)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세로부터의 공제액은 위 표의 ①의 계산식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이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40%가 상한이며, 소득세 세율은 과세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게 설정되도록 하였고, 그 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이용하게 된다. 둘째, 주민세로부터의 공제는 기본분과 특례분의 합으로 구성된다. 기본분은 고향납세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한 후 10%를 곱한 값이 된다. 이 때 공제대상이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30%가 상한이다. 그리고 특례분은 고향납세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엔을 뺀 후 ‘기본분(100%-10%) - 소득세의 세율’을 곱한 값이 된다. 주민세로부터의 공제 특례분은 이 특례분이 주민세소득할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상기 표의 ③계산식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림의 ③으로 계산한 경우의 특례분이 주민세소득할액의 20%를 넘는 경우는 주민세소득할액에 20%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①, ② 및 ③의 3가지 공제를 합하여도 ‘(고향납세액 - 2,000엔)’의 전액이 공제되지 않고 실질부담액은 2,000엔이 넘게 된다.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 5월 1일 도입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기부 건수 및 기부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동북부 지역의 대지진 이후 일시적인 증가도 있었으나, 기부 후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송부해 주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 그 상승폭은 더욱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총무성의 고향세 납세의 증가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답례품 충실’이 가장 높게 나와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¹⁾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된 기부액은 첫해(2008년도) 약 81억엔에서 2015년도에는 1,653억엔 대까지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 납부 지역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3대 대도시권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였고, 기부금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역도 10곳 이상 발생하게 되었다.

〈표 1〉 고향납세 수입액 및 수입건수의 추이(2008-2015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액 (백만엔)	8,140	7,698	10,218	12,163	10,410	14,564	38,852	165,291
수입건수 (건)	53,671	56,332	79,926	100,861	122,347	427,069	1,912,922	7,260,093

* 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로부터 정리

1) 답례품의 충실이 1,017단체(56.9%), ‘고향납세의 보급·정의’가 999단체(55.9%), ‘2015년의 제도확충(공제 규모 배증,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 창설)’ 791단체(44.2%), ‘납부환경 정비(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접수 등)’ 766단체(42.8%), ‘HP등의 홍보 충실’ 122단체(6.8%), ‘지진 재해 등 지원’ 42단체(2.3%) 등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기부 동기이론

기부 동기의 개념은 다양한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의 기부 동기는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는 내재적 요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종교적 신념, 이타성, 정체성, 동정심, 행복감 등이며, 외적 동기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타인으로부터의 요청,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등이다(강철희 외, 2011).

첫째, 내적 동기에 관한 이론이다. 내적 동기 중에서 사회적 책임감은 여러 연구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기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Bekkers and Wiepking, 2010). Cheung and Chan(2000)의 연구에서도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기부 의사 및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질수록 기부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uyt et al., 2010; Bekkers and Wiepking, 2010).

기부를 통해 얻는 심리적 행복감은 기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동기로 고려되어 왔다. Bekkers and Wiepking(2010)은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자가 죄의식을 덜 느끼고, 긍정적인 기분과 함께 본인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어 이로 인해 기부자들이 기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체성도 내적 동기요인으로 강조된다. Arnett et al.(2003)은 정체성 부각을 기부 동기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되었거나 지지했던 조직과 관련되어 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조직을 위해 물질을 기부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Shang et al.(2008)은 이타적 동기를 강조하였는데, 기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과 자긍심(self-esteem), 그리고 사람들의 초점성향(self-focus vs. other-focus)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일치할 경우 기부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긍심이 낮을 때, 정체성이 일치할 경우에는 자긍심이 높을 때 기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초점성향(self-focus)의 사람들이 타인 초점성향(other-focus)의 사람들에 비해 기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정체성이 일치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초점성향에 따른 기부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고향의 인식을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현상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애향심 등은 고향발전기부의 결정에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동정심도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웃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동정심이 자선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Bekkers, 2007; 강철희 외, 2009).

둘째, 외적 동기에 관한 이론이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동기는 국가의 기부정책, 기부문화 등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다양한 기부정책 중에서도 세제혜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졌을 경우 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없을 때에 비해 기부를 더 많이 하게끔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기부의 가격으로 설명하며, 세제혜택으로 실제로 기부하게 되는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세제혜택은 사람들의 기부를 더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Eckel and Grossman, 2003; Bekkers and Schuyt, 2005; Karlan and List, 2006). 국내에서는 조선주(2008)가 이러한 가정 하에 세제혜택이 기부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제혜택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제혜택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적 동기로서 세제혜택(공제율) 부분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하나, 일본의 경우 답례품이 고향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세제혜택의 정도에 따라 기부행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제혜택과 함께 답례품과 같은 부차적인 요인도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에서 고향발전기부금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소개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본에서 이 제도를 처음 제안하게 된 것은 2007년 10월, 『고향납세연구회 보고서(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2007)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고향(ふるさと)의 개념, 기부금 납부의 유형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제인 소득세를 함께 다루고 있어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한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이시가와 이에쓰구(2007), 오오하시 치카(2015) 등에 의해 고향납세제도의 현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 이후 일본 총무성(2016)은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결과(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状調査結果)』를 발간하였다.

국내에서 고향세(고향기부금)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는 박균조(2008)의 「지방세법령 개정안」(2008년)에서 고향세의 도입과정과 일본 내 제도도입 가능성 전망, 원종학(2010)의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염명배(2010)의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박상현·이원학(2016)의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 김동영외(2016)의 "고향기부제 도입 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등이 있다. 또한 2016년 국회의 '고향세법 추진 정책 간담회'에서는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고향납세제도의 의의와 장단점 및 국내 도입에 관련된 현안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두섭·염명배(2016)에서는 그간의 일본 고향세제의 도입 동향 및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입 시 정책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향발전 기부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렇다면 왜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에 따른 지불의사

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그 답을 얻고자 한다.

Ⅲ. 고향발전기부금의 기부동기

이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인 고향과 기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부를 통한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그 대상이 되는 고향은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향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도 또한 중요하다.

우선 고향(故郷)은 국어사전에서 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②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③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의어로는 고토(故土), 국토, 본고장 등이 있다. 여기서 태어나 자란 곳은 추억이 있는 곳이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은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대가 한곳에 정착해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그림고 정든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비도심권)'이라는 개념과는 이미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도심권에서 태어나 자라난 경우에는 도심권에 대한 그리움과 정든 곳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寄附)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하여 돈(金)이나 물건(物件)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향에 기부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자의 선호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향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 분석틀

분석을 위한 준거기준은 기부동기에 관한 내용과 지불의사액 측정관련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과 조건부가치평가법에 근거하여 준거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기부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기준으로는 기부 동기 이론에 근거하여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내적 동기 중 사회적 책임감은 여러 연구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특히 기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기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Bekkers and Wiepking, 2010),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지역사회, 본인이 태어나서 자란 곳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부를 통해 얻는 심리적 행복감은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가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부를 통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동정심이 발현되게 된다. 상술한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 기

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초점성향의 경우는 적용이 곤란하여 이번 설문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표 2〉 분석을 위한 준거기준

구분	준거기준	세부내용	기존연구
기부동기	내적 요인	삶의 보람과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행복감(Bekkers and Wiepking, 2010; Cheung and Chan, 2000; Schuyt et al., 2010), 종교적 신념, 이타성, 정체성(Arnett et al., 2003), 초점성향(Shang et al., 2008), 동정심(Bekkers, 2007; 강철희 외, 2009)
	외적 요인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국가와 지역사회에의 기여, 기부단체·직장 등의 요청, 세제감면혜택	경제적 여유, 국가의 기부정책, 세제혜택(Eckel and Grossman, 2003; Bekkers and Schuyt, 2005; Karlan and List, 2006; 조선주, 2008), 기부문화, 타인으로부터의 요청,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등
	관련 요인	기부경험,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고향과 기부처, 기부유형, 기부방법 등	
지불 의사액	적용모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 확률효용모형	
	변수	지역(고향),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가중치	고향지역, 연령, 가구주 여부	

외적 동기로는 국가의 기부관련 정책이나 준거집단의 기부 문화 등 외부환경요인이 강조된다. 다양한 기부정책 중에서도 세제혜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세제혜택이 기부의회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실제 이러한 효과가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Eckel and Grossman, 2003; Bekkers and Schuyt, 2005; Karlan and List, 2006).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주(2008)는 세제혜택이 기부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제혜택의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부동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로서 기부경험과 기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개인의 기부 습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경험이 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 때 개인이 기부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 가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 조사의 목적이 고향발전기부금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자체를 주요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기부의 유형·규모·방법 등은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기부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기부 방법이나 시기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부동기에 대한 인식 파악 이후에는 실제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 의사액을 묻게 된다. 이것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기부경험 및 기부동기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을 것이며

그로 인해 지불의사액도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응답자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을 먼저 물어 이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고향발전기부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불의사액 질문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CVM 설문 of 장단점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고 확률효용모형을 적용하였다. 고향발전기부금 지불의사액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역(비수도권),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는 지역(고향), 연령, 가구주 여부가 적용되었고 학력수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가구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적용에서 배제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및 지불의사액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을 출향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지역발전 기부를 한다면 그 가능성(기부 의사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자를 출향한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할 것은 일본과 같이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부자는 물론 지역을 출향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신의 수도권 거주자도 해당될 수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볼 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출향한 경우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지역발전 및 지역의 재정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기부를 통한 지역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그 조사대상지 또한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기간을 2016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정한 것은 고향에 대한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기를 택하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설문조사 대상인원은 비수도권이 고향인 수도권 거주자 남녀 206명이다. 설문 방법은 DBDC에 대해 생소한 상황에서 설문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다.

- 설문조사 기간: 2016년 9월 9일 ~ 13일
- 설문조사 대상: 비수도권이 고향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남녀 206명(남성 111명, 여성 95명)²⁾
- 설문조사 방법: 대면 면접 설문조사 실시

2) 설문조사 대상자를 수도권 거주 비수도권 출향자로 한정할 것은 이 연구의 취지가 지역발전 및 지역의 재정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조사대상지 또한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 대상 분포는 경상권 99명, 전라권 37명, 충청권 51명, 강원권 11, 제주 8명 등이며, 연령별로는 25세 미만 43명, 25~40세 86명, 41~64세 70명, 65세 이상 7명 등이다. 설문 방법은 대면 조사를 하고 있으며 DBDC에 대해 생소한 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기부와 같이 시장가치와 시장에서의 직접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시장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기부와 같이 시장에서 그 가치 측정이 쉽지 않으며, 기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즉 기부라는 비시장재(non-market goods)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방법은 주로 설문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시장재에 대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게 된다. 이러한 가상적 상황 하에 비시장재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게 된다. 이 때 평가액의 편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CVM방법은 지금까지 주로 환경재와 관련하여 가치평가를 해 왔으며 최근에 그 범위가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화적 재화나 관광 분야에 대한 가치 측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기금을 조성하고자 CVM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있다(김영하·박성범, 2014). 그러나 이 역시 순수하게 기부금에 대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CVM 방법은 특히 가상 상황의 전후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 상황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즉 대상 재화의 비시장적 상황의 상태 변화를 적절히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설문 응답자들도 적절한 지불 의사액을 대답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 선호(preference) 즉, 선호체계(효용함수)를 알 수 있다면 그 가치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향과 같이 비시장재는 소비자의 선호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호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choice)만 관측할 수 있을 뿐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본인의 주관적인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 즉,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비교하여 구매 결정을 할 것이다(조선주, 2010: 57). 이것이 최대지불의사금액(WTP) 즉 기부금액이 될 수 있으며,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현시선호법(RP, revealed preference method)과 진술선호법(SP, stated preference method)으로 구분된다.³⁾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리 시장을 찾기 어렵고 비사용 가치를 주를 이룰 경우 진술선호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에는 가상시장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많이 사용한다. 고향의 경우도 관련 시장의 탐색 곤란, 직접사용보다 비사용가치 비중이 크기 때문에 CVM을 통해 그 가치를 찾고자 한다.⁴⁾

이 방법은 미시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간접적 방법의 적용 유무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호를 나타내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의 작성과 조사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지불의사 유도방법에서는 Hanemann(1984)

3) 현시선호법에는 여행비용법, 확률효용모형, 헤도닉 가격법, 회피행위법 등이 있으며, 진술선호법은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진술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가상시장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 등이 있다.

4)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CVM 방법이 주로 '공공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 및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개인 및 세대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WTP)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환경분야 등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으며, 문화 및 과학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의 양분선택형 질문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도 이를 채택하고자 한다. 우선 설문은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와 관련한 CVM 시장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표본 추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자들의 WTP를 실제와 가장 유사하도록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크게 기부에 대한 인식, 고향발전기부금에 대한 인식,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수도권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향발전기부금 명목으로 기부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 가능할지에 대해 의향을 파악하게 된다.

설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현 기부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질문하게 된다. 이것은 향후 고향발전세 납세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부를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고향발전세 납세에 대한 인식으로 고향에 대한 인식, 기부 대상, 기부 가능 금액, 기부 유형, 기부 방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표집에 있어서는 설문대상자를 비수도권 출향자 중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석 명절 기간에 수도권의 열차역, 터미널, 공항 등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설문 유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CVM방법을 취하고 있다. 고향(지역)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방법론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CVM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취하고 있다. 설문8에서는 '귀하는 고향발전을 위해서, 현재 내시고 있는 기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매년 ___원 기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지불의사에 따라 질문8-1 및 질문8-2의 부가 질문을 통해 추가 2배 및 1/2배의 기부의사를 묻고,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 질문9 및 질문9-2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방법은 CVM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전적인 설문방법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되고 있었던 비대면 방법(온라인 및 유선 등)을 통한 조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면 설문 방법을 취하고 있다.

2) CVM조사의 설계와 자료

우선 CVM 방법론에 따라 가상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WTP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 방법론을 이용한 고향의 가치 측정과정을 도식화하면, ① 가상 시장 시나리오 설계, ② 설문지 설계, ③ 표본 설계와 조사, ④ 모형 설정과 분석, ⑤ 지불의사금액(WTP)함수 설정과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설문조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TP를 실제와 가장 근사한 값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가치 재화의 구성 시나리오 작성이 중요하며, 설문 응답자들이 조건부 재화나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향에 대한 개념 정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고향에 기부를 왜 해야 하는지, 기부를 할 경우 그 용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영향이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설문결과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재화나 서비스를 정의한 후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불수단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지불수단으로는 세금, 부담금, 수수료, 가격인상, 입장료 등과 같은 강제 지불수단과 기부금이나 선물 같은 자발적 지불수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인 자발적 지불수단인 기부를 선택하였다.⁵⁾ 아울러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double bounded approach)을 사용하여 최대 지불의사에 대한 분산이 작아지도록 하고 있다.⁶⁾ 그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인 고향발전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고향발전을 위한 요금으로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도록 설계하게 된다. 응답자들은 고향이나 관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이해하고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없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CVM방법을 활용하여 지불의사자들의 의향을 묻게 되는 시도이며, 일반 시장에서 측정하기 곤란한 고향발전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부한 기부금의 비시장재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P에 의한 기부의사액 추정이 실제로 기부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향발전기부금제도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기 위한 충분한 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기부동기와 지불의사액 추정은 새로운 기부금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기부동기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동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남성 111명, 여성 95명의 성별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고향별로는 경상권 99명, 전라권 37명, 충청권 51명, 강원권 11, 제주 8명 등이며, 연령별로는 25세 미만 43명, 25~40세 86명, 41~64세 70명, 65세 이상 7명이었다. 아울러 학력별로 보면 초·중등 1명, 고졸 63명, 대졸 120명, 대학원졸 22명 등이며, 주거지(수도권) 현황을 보면 서울 157명, 경기 42명, 인천 7명이었다.

기부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경험,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에 대한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70.05%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29.95%는 기부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기부경험 비율을 보면, 25세 미만 60.47%, 25~40세 68.97%, 41~64세 78.57%, 65세 이상 57.14%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중년층(사회적으로 안정적 위치에 있는 세대

5) 단, 이러한 자발적 지불수단의 경우 무임승차(free riding) 등의 전략적 선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6) 이 때 후속질문을 하여 매우 부정적인 답을 한 경우 실제로 지불의사가 그러한지 아니면 지불거부의사를 표출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조선주외, 2010).

층)에서 기부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대별 기부경험 유무

(단위: %)

	예	아니오
총계	69.7	30.3
25세 미만	60.5	39.5
25세~40세	69.0	31.0
41~64세	78.1	21.9
65세 이상	57.1	42.9

아울러 기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평소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한 경우가 1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평소 이웃 및 지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84%), 정부 재정만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83.57%를 보였다.

또한, 기부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5%로서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인 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포함한 기부활동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50.00%)와 매우 그렇다(9.80%)로 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기부활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재산 기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다(31.88%), 매우 그렇다(2.42%)로 답하여 재산 기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그렇지 않거나(26.57%), 전혀 그렇지 않다(6.28%)에 비해 많았다. 마지막으로 세제감면혜택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17%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그렇지 않다 25.24%, 전혀 그렇지 않다 6.31%)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 대부분 기부에 대한 경험이나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세제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부동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기부동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삶의 보람과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등이 가장 높은 동기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동정심’의 순을 보였으며, ‘종교적 신념’이나 ‘기부단체와 직장의 요청’, ‘세제감면혜택’ 등은 8가지 동기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연령대로 구분해서 교차분석을 해 본 결과, 65세 이상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사회적 위신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기부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부단체 중 이미지(신뢰성, 투명성, 전문성)가 가장 높은 단체로는 ‘사회복지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순으로 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기부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기부 동기에 대한 인식

(단위: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삶의 보람과 행복감	1.5	6.6	28.4	49.8	13.7	3.68
사회적 책임감	2.5	15.2	33.3	39.9	9.1	3.38
종교적 신념	24.6	28.6	23.1	19.6	4.0	2.5
동정심	4.6	24.2	32.3	32.5	5.7	3.10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2.6	23.5	37.8	32.1	4.1	3.12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	5.2	24.0	30.7	37.0	3.1	3.09
기부단체, 직장 등의 요청	13.3	33.9	30.8	21.0	1.0	2.63
세제감면혜택	13.9	31.8	34.9	15.4	4.1	2.64

셋째, 현재 기부를 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액에 대한 설문에서는 60.5만원 정도이며, 최대기부 가능 금액은 124.7만원이었다. 이는 결국 현재 평균 기부액의 최대 2배 가까운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연간 기부금액 및 최대기부 가능 금액

(단위: %(명))

구분	연간 기부금액	연간 최대기부 가능 금액
0~10만원	49.2(63)	21.1(27)
11~50만원	33.0(42)	38.3(49)
51~100만원	10.9(14)	26.6(34)
101~500만원	3.9(5)	8.6(11)
500만원 이상	3.1(4)	3.1(4)
평균액수(만원)	60.5	124.7

2) 고향과 기부처에 대한 인식

고향에 대한 인식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삶 전체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5.41%,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나 '실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33.33%,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14.98%,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28% 등이다. 따라서 78.74%의 응답자가 고향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부 대상처를 묻는 질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많은 28.50%, '특정 지역 없음' 24.64%, '부모,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지역' 22.71%, '내가 태어난 고향' 21.74%의 순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하는 지역이 없다'고 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는 내가 살고 있거나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과 같이 도심권으로 이동 인구가 많고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형제마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부 비율은 21.7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이 비율은 지역을 특정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인 24.64%보다도 더 낮다.

셋째, 기부경험 유무별로 나누어 고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기부경험 유무와 성별 고향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거나 ‘실생활에서 인식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부 경험이 있는 그룹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그 비율을 보면, 남성 그룹에서는 고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보다는 ‘실생활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기부 경험이 있는 여성 그룹에서 고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부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 그룹에서 모두 고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 기부 경험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⁷⁾

〈표 6〉 기부경험 유무와 성별 고향에 대한 인식

(단위: %)

기부의 경험유무		고향의 중요성 인식			
		중요	실생활 인식 못함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	생각해 본 적 없음
기부 경험 유	계(100%)	37.1	38.7	12.9	11.3
	남성(100%)	31.6	44.8	7.9	15.8
	여성(100%)	45.8	29.2	20.9	4.2
기부 경험 무	계(100%)	49.0	31.0	15.9	4.1
	남성(100%)	48.0	32.9	17.8	1.4
	여성(100%)	49.3	29.6	14.1	7.0

3) 기부 유형·규모·방법

기부 유형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9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야 및 농지 2.46%, 상가 1.48% 등의 순이었다. 이는 현금이 기부의 편리성에서는 유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부를 할 경우의 기부할 재산의 규모에 대한 설문에서는 1만원~10만원이 가장 많은 38.12%, 10만원~100만원 34.65%, 100만원~1천만원 16.34%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고향세와 같은 고향발전기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부 규모 등을 고려한 공제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 이후 제공 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관현황 및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이 57.38%로 가장 높았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34.97%, ‘정기소식지/웹진’ 20.77%, ‘기부자 답례품 제공(지역 특산품 등)’ 13.11%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일본의

7) 실제 고향인식에 있어 기부경험 유무가 중요한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Pearson 값은 5.749, 점근유의확률값은 0.124을 얻었다. 이는 결국 고향인식에 있어 기부경험 유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향납세 수입액과 수입건수가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답례품의 충실, 고향납세제도의 보급과 정착, 2015년도 제도 확충, 수납환경정비(신용카드 납부, 전자신청 접수 등), 홈페이지 홍보, 사용처 및 사업 내용 충실, 재해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입액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 인터넷 활용, 홍보물 작성, 답례품 충실, 편의점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법의 충실, 사용처 명확화 및 선택 가능한 사업의 충실, 각종 이벤트 PR과 초청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결국 납부자의 수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홍보에 충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우리와 큰 차이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기부자 답례품 제공에 대한 비율이 13.1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답례품이 고향납세의 큰 동기부여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기부 이후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단위: %)

항목	정기소식지 / 웹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초청행사	기관현황 및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 사실에 대한 홍보 (기부자 혹은 직장)	기부자 사은품 제공(지역 특산품 등)
응답률	20.9	36.2	3.4	56.5	8.5	13.6

기부 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이체’(45.00%)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ARS 전화 또는 인터넷 모금’(31.00%), ‘직접 전달’ 26.50%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역시 기부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부 회수에 있어서는 연1회(36.45%), 연2회(26.11%), 연 4회 이상이나 정기(17.73%)의 순을 보여 그 빈도수는 대체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부금의 사용처(분야)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많은 72.68%,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이 15.61%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총무성이 실시한 고향납세 사용처(사용목적)의 선택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건강·의료·복지’분야가 가장 많아 이러한 경향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이 교육 및 인재육성, 환경, 아동육아와 지역산업진흥 순이었다(총무성, 2015).⁸⁾

8) 건강·의료·복지 1,257단체, 교육 및 인재육성 1,237단체, 환경 1,192단체, 아동육아 1,097단체, 지역 및 산업진흥 1,095단체, 스포츠 및 문화진흥 1,007단체, 마을만들기와 시민활동 936단체, 관광·교류·정주축진 831단체, 안심·안전·방재 637단체, 재해지원·진흥 126단체 등이다.

IV. 고향발전기부금의 지불의사액 추정

1. 지불의사액추정을 위한 적용모델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향납세기부를 통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는 연구가 거의 없고, 아직 본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향발전기부자들의 기부 가치(편익)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화폐가치로 추정하고자 한다. 최대지불의사 추정의 적용모델은 고향발전기부를 통해 기부자의 고향이나 관심 지역의 발전에 부여하는 가치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⁹⁾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유도방법을 이중양분선택형기법(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 method)을 사용하여 질문하였으며, 특히 제시액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형태는 4가지 경우(yes/yes, yes/no, no/yes, no/no)로 구분하였다. 실제 WTP의 집계를 위해서는 즉, 지불의사액합계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지불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중요하며, 이 때 얻어진 지불의사액의 금액은 통계적으로 소득계층, 지역, 나이, 문화적인 배경 등에 따른 가중치 부여와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문화적 배경 또한 큰 편견(bias)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조선주외, 2010: 117).

아울러 계량경제학의 모형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과 확률지불의사함수(random willingness to pay function)가 사용된다.¹⁰⁾ CVM 방법은 비시장에서의 가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폭넓은 지불의사액 범주와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불의사액추정 시점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측정 대상자들의 사전적 시점의 후생 척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lejandro(2012)에서 제시하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금액에 예라고 대답하면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추가 질문하여 예나 아니오를 응답하도록 하고,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그 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예나 아니오를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불의 경우를 y_i^1 와 y_i^2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만약 첫 번째 질문에서 '예'를 두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를 답하는 경우 그 확률은 아래와 같다.

9) CVM은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향발전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고향발전기부금을 위해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묻도록 설계하였다. 단,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그 지불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부라는 반강제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10) 이주경·김세준(2016)은 McConnell(1990)의 주장에 따라 두 방법 모두 옳고 그름이 없으나, 효용격차모형이 효용이론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많아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Hanemann(1984)의 확률효용모형이 활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Pr(y_i^1 = 1, y_i^2 = 0 | z_i) = \Pr(s, n) \quad (1)$$

또한 최대지불의사액이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경우의 수는 4가지로 나타 낼 수 있다.¹¹⁾

$$WTP_i(z_i, u_i) = z_i' \beta + u_i, u_i \sim N(0, \sigma^2) \quad (2)$$

또한 이 때 u 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있게 되면 최대지불의사금액의 분포에 대한 추정과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이 구해질 수 있다(조선주, 2010). 아울러 모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β 와 σ 를 측정할 수 있다. 추정값을 도출하기 위한 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um_{i=1}^N \left[d_i^{sn} \ln \left(\Phi \left(z_i' \frac{\beta}{\sigma} - \frac{t^1}{\sigma} \right) - \Phi \left(z_i' \frac{\beta}{\sigma} - \frac{t^2}{\sigma} \right) \right) + d_i^{ss} \ln \left(\Phi \left(z_i' \frac{\beta}{\sigma} - \frac{t^2}{\sigma} \right) \right) \right. \\ \left. + d_i^{ms} \ln \left(\Phi \left(z_i' \frac{\beta}{\sigma} - \frac{t^2}{\sigma} \right) - \Phi \left(z_i' \frac{\beta}{\sigma} - \frac{t^1}{\sigma} \right) \right) + d_i^{nn} \ln \left(1 - \Phi \left(z_i' \frac{\beta}{\sigma} - \frac{t^2}{\sigma} \right) \right) \right] \quad (3)$$

이 때 d_i^{sn} , d_i^{ss} , d_i^{ms} , d_i^{nn} 등은 각 4가지 경우에 있어 기여하는 가치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Alejandro, 2012: 12).¹²⁾ 이 때 s 와 n 은 예와 아니오의 경우를 나타낸다.

2. 변수의 설명

본 설문은 보기카드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취지 및 제도적 특징을 설명하고, 인구사회학적인 정보와 고향발전기부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특히 이 설문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적인 변수로는 비수도권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및 제주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대를 25세미만, 40세미만, 64세 미만, 65세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아울러, 학력에서는 초·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입에서는 세후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원수는 1명부터 5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 답변자가 가구주 본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11) 보다 자세한 4가지 경우는 Alejandro(2012)의 10~12페이지를 참조한다.

12) 양분선택모형에서 지불의사액 추정은 $WTP_i(z_i, u_i) = z_i' \beta + u_i$ 을 활용하게 된다. 이 때 z_i 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파라미터 벡터, u_i 는 오차항이다.

〈표 8〉 변수에 대한 설명

단위: 명(%)

Variable	Obs*	구 분				
		고향	100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53명(53%)	17명(17%)	21명(21%)	4명(4%)	5명(5%)
연령	101	25세미만	25~40세	41~64세	65세이상	
		22명(21.8%)	46명(45.5%)	29명(28.7%)	4명(3.9%)	
성별	101	남성	여성			
		55명(54.5%)	46명(45.5%)			
교육수준	101	초,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	29명(28.7%)	60명(59.4%)	12명(11.8%)	
소득수준	99	0~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29명(29.3%)	15명(15.2%)	24명(24.2%)	18명(18.2%)	13명(13.1%)
가구원 수	99	1명	2명	3명	4명	5명
		16명(16.2%)	14명(14.1%)	17명(17.2%)	40명(40.4%)	12명(12.1%)
가구주 여부	101	본인	그외			
		50명(49.5%)	51명(50.5%)			

* 최대기부가능금액에서 현재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0이거나 부(-)의 값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우선, 설명변수가 없는 단순한 지불의사액에 대한 의향만을 나타낸 모델의 경우, 연간 WTP값은 138.65만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낸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의 결과치를 보면 WTP값이 116.31만원으로 단순한 모델보다는 지불의사액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고향, 연령, 가족원수, 가구주 본인 여부)만 포함한 모델의 경우 115.83백만원의 WTP값을 얻을 수 있었다.

〈표 9〉 각 모델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가 없는 단순 모델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모델			유의한 변수만 포함한 모델*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독립변수									
고향				-34.1782	16.62928	0.040	-32.22453	15.74904	0.041
연령				59.17778	32.55939	0.069	62.93869	24.72915	0.011
성별				-50.60841	39.46516	0.200			
교육수준				30.61393	41.89251	0.465			
소득수준				-8.028536	22.01937	0.715			
가구원 수				29.95878	16.13005	0.063	32.0369	15.17204	0.035
가구주여부				118.3294	51.0036	0.020	138.9415	41.46156	0.001
_cons				-107.1779	113.6188	0.346	-96.33341	79.12523	0.223
Sigma_cons	281.523	21.58895	0.000	168.0673	13.05691	0.000	169.0417	13.04939	0.000
WTP(만원)	138.6476		0.000	116.316	17.5895	0.000	115.8364	17.54699	0.000

이를 다시 고향지역에 따른 WTP값을 보면 경상도 지역이 가장 높은 145.16만원, 전라도 112.93만원, 충청도 80.71만원이며, 제주도가 가장 낮은 16.26만원의 값을 얻었다. 또한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나 지역별로 지불의사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지역별 고향발전기부금의 규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표 9-1〉 고향 지역에 따른 WTP

	WTP	Std. Err.	P>z
1. 경상도	145.1608	22.7814	0.000
2. 전라도	112.9362	17.58813	0.000
3. 충청도	80.71169	24.40812	0.001
4. 강원도	48.48716	37.12459	0.192
5. 제주도	16.26263	51.54394	0.752

그리고 연령에 따른 WTP값을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불의사액이 점점 낮아지며, 고 연령자일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고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다소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지역별 출향인사나, 비수도권이 고향이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고향발전기부금 확보가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2〉 연령에 따른 WTP

	WTP	Std. Err.	P>z
1. 25세미만	43.55041	32.49594	0.180
2. 25~40세	106.4891	17.71472	0.000
3. 41~64세	169.4278	28.19038	0.000
4. 65세 이상	232.3665	49.98645	0.000

마지막으로 가구주 여부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보면 가구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불의사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¹⁴⁾

13)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표본수가 적은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14) 이외에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유의한 변수들만 포함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표시하였다.

〈표 9-3〉 가구주 여부에 따른 WTP

	WTP	Std. Err.	P>z
1. 가구주	185.995	27.77117	0.000
2. 기타	47.05352	26.54546	0.076

V. 맺음말

전술한 바와 같이 고향발전기부금제도는 개개인의 기부동기를 유인하는, 즉 정서적 심금을 울리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본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령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도입된 취지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고향발전기부금(고향세)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한 설문 대상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의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고향발전기부의 기부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고향발전기부금은 기부 경험 유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향발전기부금의 납부가 기부 경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고향발전기부 대상자는 기부 유경험자를 타깃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령대별 기부 경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세대가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는 기부 경험에 따라 고향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부 대상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종교단체 순으로 선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관심이 타 대상보다 높지 않아 향후 고향발전기부금제도 도입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부동기에 있어서는 '삶의 보람과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등이 높은 동기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여나 동정심, 종교적 신념, 세제혜택 등에 있어서는 낮은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고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은 인식하나 실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33.33%나 있었으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인식도도 낮지 않기 때문에 정책도입 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부 대상처로는 현 거주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28.50%였다. 그러나 본인이 태어난 지역은 21.74%로서 특정하지 않겠다는 24.64%보다 낮게 나와 고향은 본인이 태어난 곳이라는 고정관념은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울러 기부유형과 규모 및 방법에 있어서는 현금이 가장 많은 94.09%, 기부규모에 있어

서는 10만원 이하가 38.1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규모는 결국 기부금제도의 도입관련 공제제도의 설계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부 후 제공을 원하는 서비스로서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영수증 발급, 정기소식지/웹진 등을 받고 싶다고 한 답변이 많았으며, 지역 특산품 등 사은품 제공을 원하는 경우도 13.6%가 있었다. 기부자들이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향발전기부금을 도입하더라도 그 용처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의 사용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나 보건의료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분야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각 지자체의 재정수요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요처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임을 감안할 때 기부금을 통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고향발전기부금의 격차는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향발전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액추정 결과를 보면, 단순히 설명변수가 없는 지불의사액에 대한 의향만을 나타낸 모델(I)에서는 가장 많은 138.65만원,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모델(II)의 경우 116.31만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포함한 모델(III)은 115.83만원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다시 고향에 따라 추정한 경우 경상도, 전라도, 충청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경상도 지역이 가장 높은 145.16만원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연령별 구분에 있어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지불의사액은 높아져 65세 이상의 경우 232.36만원으로 25세 미만의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구주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불의사액추정으로 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이 지불의사액이 높았으며, 고령자 및 가구주의 지불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WTP를 통해 지불동기 및 지불의사추정액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고향발전기부금 제도 도입에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설문결과에서는 연령대가 높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일수록 기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과 함께 기부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향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 보다 많은 기부 가능성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진의 당초 예상과는 일치하지 않은 부분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기부 경험자들이 남성보다 고향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부분은 조사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부터 유교주의적, 남성 중심적인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 출향한 경우에도 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고향으로의 회귀 본능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함께 양성에 대한 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고향발전기부금 제도 도입에 있어 대상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향발전기부금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세제혜택 등의 효과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 동기에 있어서 그 유인효과가 크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조선주(2010)에서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이것이 기부를 증대하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어 향후 연구에서는 세제혜택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혜택 범위 및 유형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여 국가적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세제혜택 여부 및 그 범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고향에 대한 인식부분이다. 결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향에 대해 그 중요성은 인식하나 실생활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출향한 기간이 길고 그 후세들이 도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본 연구를 시작할 때 설문대상자를 비수도권이 고향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도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고향발전기부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출향한 도시민들에게 기부를 호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지를 한정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출향한 지역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3대 도심권포함)도 가능하다. 물론 실제 기부 대상지는 비도심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그렇다면 고향에 대한 인식과 결부하여 지역별 자원 확보의 균형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출향한 경우 현 생활에서 고향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부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처럼 28%의 기부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나머지 약 72%가 각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분산되더라도 몇몇 지역으로 편중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¹⁵⁾ 물론 이번 조사가 CVM이라는 가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조사 방법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들의 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이나 설문대상자의 대표성 문제 등 조사방법 자체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를 보완한 조사방법론을 통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향발전기부금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제도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의 재정 부족을 확충하고자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면에는 분명히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잠재적 메시지가 있다. 지역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고향발전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고향이라는 고정관념이 아닌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관심지역이나 거주지 발전을 위한 자원확보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5)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수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별 인구를 고려했을 때 표본 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표본수 자체가 적어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철희·이민영. (2009).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 발표논문.
- 강철희·구지윤·박소현. (2011).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국내기부와 해외 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221-253.
- 김기승. (2016). 고향납세(고향기부세) 도입 가능성 연구 토론문. 국회「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 토론자료, 53-56.
- 김동영·양성빈·김형오·이중섭. (2016). 고향기부세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ISSUE BRIEFING」, 149.
- 김영하·박승범. (2014). 가상평가법(CVM)에 의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부산시 APEC기념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2(2): 19-32.
- 박균조. (2008).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지방재정과 지방세」, 2: 158-168.
- 박상현·이원학. (2016).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 「정책메모」, 528.
- 박상현. (2016). 고향세 도입 검토관련 간담회 토론요지. 국회「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 토론자료, 47-49.
- 원종학. (2010).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 조선주. (2008). 개인의 자원봉사행위에 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5(1): 73-99.
- _____. (2010).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두섭·염명배. (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147-196.
- 양성빈. (2016). 고향기부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국회「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 토론자료, 23-41.
- 염명배. (2010).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 _____. (201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재정정책논집」, 14(1): 101-140.
- _____. (2016). 고향납세(고향기부세) 도입 가능성 연구. 국회「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7-17.
- Alejandro, L. F.(2012), Introduction to contingent valuation using Stata, MPRA Paper,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41018, 1-16.
- Arnett, Dennis B., Steve D. German, and Shelby D. Hunt(2003), The Identity Salience Model of Relationship Marketing Success: The Case of Nonprofit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67, 89-105.
- Bekkers, R.(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 Bekkers, René and Theo Schuyt(2005), And Who Is Your Neighbor? Explaining the Effect of Religion o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Working paper, Department of

Philanthropic Studie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 Bekkers, R., and Wiepking, P.(2010). *Accuracy of Self-reports on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Quality & Quantity.
- Cheung, C. K., and Chan, C.M.(2000). Social-cognitive factors of donating money to charity, with special attention to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241-253.
- Eckel, Catherine C. and Philip J. Grossman(2003), Giving to Secular Causes by the Religious and Nonreligious: An Experiment Test of the Responsiveness or Giving to Subsidi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 271-289.
- Hanemann, W. M.(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332-341.
- Karlan, Dean and John A. List(2006), Does Prices Matter in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Large-Scale Natural Field Experiment, Working paper, Yale University.
- Shang, Jen, Americus Reed II, A., and Rachel Croson(2008), Identity Congruency Effects on Do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June), 351-361.
- Schuyt, T. N. M., Smit, J., & Bekkers, R.(2010). The Philanthropy Scale: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measuring new forms of pro social behaviour. Working Paper Department of Philanthropic Studies, VU University Amsterdam.

ふるさと納税研究会, 『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総務省, 2007. 10.

大橋知佳, “ふるさと納税のすゝめ”, 『日経研月報』, 2015. 5.

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状調査結果』, 総務省, 2016. 6.

[URL] 総務省 홈페이지 고향(후루사토)납세 포털사이트 :

<http://www.furusato-tax.jp/faq.html#faq16>

신두섭(申斗燮): Nagoya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非営利団体の経済分析 - 芸術文化団体を中心として -),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지방투자사업 관리, 지자체의 문화재정, 성인지예산 등이다. 저서로는 「창의적 농촌경제의 성공모델」(공저)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2014),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인지연구”(2015),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2016) 등이 있다(sds@krila.re.kr).

하혜수(河慧洙):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지방정부의 정책산출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정부간 관계, 지방분권, 갈등협상연구 등이다. 저서로는 「지방자치론」(공저)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성공요인 분석”(20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모형 비교”(2016), “대성동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2016) 등이 있다(hasoo@knu.ac.kr).

부 록

≡ 고향발전세 납부(기부)에 대한 의견 조사 ≡

안녕하십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현안 사안들을 조기에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당 연구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출향하여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고향발전세 납부(기부)를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국내 거주자 분들의 고향발전 기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원방안 마련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배려해주시면 고향발전세(가칭) 제도"의 도입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사관련 문의사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신두섭 : 02-3488-7371

* 일본의 후루사토(고향)납세제도 : 일본에서는 본인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충당하고 있음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I. 기부에 대한 인식조사

1. 귀하께서는 기부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다음은 귀하의 기부에 대한 인식 및 태도관련 사항입니다. 적당한 곳에 '√' 표 해주시 바랍니다.

	① 매우 그렇 다	② 그렇 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지않 다	⑤ 전혀 그렇 지않 다
1. 평소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2. 평소 이웃 및 지역 사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3. 정부의 재정만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기부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기부활동(봉사포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6. 나는 재산(부동산·유산등)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					
7. 기부를 통한 세제감면혜택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3. 다음은 귀하가 기부를 하게 되는 동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당한 곳에 '√' 표 해주시 바랍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삶의 보람과 행복감					
2. 사회적 책임감					
3. 종교적 신념					
4. 동정심					
5.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문화					
6.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					
7. 기부단체, 직장 등의 요청					
8. 세제감면혜택					
9. 사회적 위신과 주위의 시선					
10. 기타 ()					

4. 다음은 기부단체로서 이미지(신뢰성, 투명성, 전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당한 곳에 '√' 표 해주시 바랍니다.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사회복지단체					
4. 종교단체					

5. 귀하께서 기부를 하고 계신다면, 연간 얼마의 기부를 하고 계십니까, 기부금액의 최대 규모로 연간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금액 기준)

- 현재 기부금액()만원/연간
- 최대 기부 가능 금액()만원/연간

II. 고향발전세 납세(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6. 귀하께서는 ‘고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고향은 삶 전체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② 고향은 중요하나, 실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 ③ 실제 고향은 따로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 귀하께서 지역에 ‘기부’를 한다면 어디에 가장하고 싶으신가요?

①	②	③	④	⑤
내가 태어난 고향	부모,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행 및 방문 경험이 있어 인상이 남은 곳	특정 지역 없음

8. 귀하는 고향발전을 위해서, 현재 내시고 있는 기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매년 _____ 원 기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8-1으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8-2으로 가십시오

8-1. 그러면, 고향발전을 위해서, 현재 내시고 있는 기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기부를 매년 제시금액의 2배인 _____ 원 기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10으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10으로 가십시오

8-2. 그러면, 고향발전을 위해서, 현재 내시고 있는 기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기부를 매년 제시금액의 1/2배인 _____ 원 기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10으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9로 가십시오

9. 그렇다면 귀하는 고향발전을 위해 전혀 기부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 ① 예, 지불의사가 없다 → 9-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지불의사가 있다 → 9-2로 가십시오

9-1. 귀하가 고행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전혀 지불(기부)하실 의사가 없다고 밝히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 후 11로 가십시오)

- ① 내(우리 가족)는 지불(기부)할 능력이 없다.
- ② 이미 납부한 기부금(세금)으로 고행발전에 충당되어야 한다.
- ③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 ④ 이미 고행발전을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 ⑤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 ⑥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 ⑦ 우리 주변에 비슷한 대체 방법들이 많다.
- ⑧ 추가적인 기부금(세금)이 명시된 사업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 ⑨ 기타 _____

9-2. 그러면, 귀하는 고행발전을 위해서, 현재 내시고 있는 기부금 외에 매년 얼마 정도를 추가적으로 기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향후 5년간 매년 (_____)원

10. 귀하가 고행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추후 고행을 방문하거나 귀농 및 귀촌을 하고자 한다.
- ②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차후에 고행에 자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 ③ 내가 자주 찾아갈 가능성은 없지만 고행이 발전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 ④ 고행발전을 위해 현재의 재원으로서는 부족하다.
- ⑤ 기타 _____

11.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어떤 재산을 하시겠습니까?

- ① 임야 및 농지 ② 대지 ③ 주택 ④상가 ⑤ 선박 및 기타유형재산 ⑥ 현금

12.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기부할 재산의 최대 규모로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금액, 현가기준)

-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10만원 ③ 10만원~100만원
- ④ 100만원~1천만원 ⑤ 1천만원~5천만원 ⑥ 5천만원~1억원 ⑦ 1억원 이상

13. 귀하께서 지역(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에 제공 받고 싶은 서비스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정기소식지/웹진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③ 기부자 초청행사
- ④ 기관현황 및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 ⑤ 기부 사실에 대한 홍보(기부자 혹은 직장)
- ⑥ 기부자 사은품 제공(지역 특산품 등)
- ⑧ 기타(_____)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Donations for Hometown Development: Focus on the Donation Motives and the WTP Evaluations

Shin, Du-Sub

Ha, Hyue-Su

The hometown tax system introduced in Japan in 2008 is evaluated as contributing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nd also to local development, as local specialties are recently used as a return present. However, concerns on cut-throat competition also increase. As the hometown tax system was adopted in Japan, the review on the adoption of the system has continuously been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the system was introduced as the type of donations, some interpret the system as the expansion of existing don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perception on hometown and WTP (willingness to pay) through actual donation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people having hometown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in an effort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hometown development donations syste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the status of donation experience was not much correlated with hometown development donations, and most perceived hometown is important, but not small number of the respondents perceive the place where they live as hometown. In the evaluation of individual's WTP, the WTP was higher, when the respondents were in the stabl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aged and household heads. A further study on the deduction system on donations will be needed in establishing the relevant system and policy.

Key Words: Hometown tax, Hometown development donation, donation motive, CVM, WTP